

파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88
----------	-----

제출년월일 : 2000. 8. 1.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상위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과태료 및 배출부과금 부과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으며 과태료 금액도 시행령 [별표8]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파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과태료 및 배출부과금 부과기준을 개정코자 함.

□ 주요골자

가. 과태료 및 배출부과금 부과기준 삭제 (안 제16조)

과태료 부과기준은 법 제58조, 영 제35조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배출부과금 부과기준도 법 제29조, 영 제18조 내지 영 제25조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관련 규정 삭제

나. 배출부과금 등의 부과기준 삭제 (안 별표3)

1. 배출부과금 부과기준 : 법 제29조 및 영 제18조 내지 영 제25조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으로 삭제
2. 과징금의 부과기준 : 법 제 37조 제2항 내지 제5항 및 영 제28조, 영 제29조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으로 삭제

다. 과태료부과기준 삭제 (안 별표4)

시행령 [별표8]에 과태료부과금액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으로 삭제

파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를 삭제한다.

[별표1] 의 하단에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비고 : 1. 수집수수료 산출공식 : 수집량 l × 수거요금 ÷ 부과기준량 l
2. “원” 단위는 질사한다”

[별표2] 의 제목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청소수수료”를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청소수수료”로 하고, 하단에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비고 : 1. 청소수수료 산출공식 : 기본요금 + (청소용량 l - 기본용량 l) × 초과요금
2. “원” 단위는 질사한다”

[별표3] 를 삭제한다.

[별표4] 를 삭제한다.

부 칙

이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소관실·과·소		환경보호과 ☎ 940-4481
입안자	환경보호과장	박철순
	폐기물관리담당	박재진
	담당자	류정아

신 · 구 조 문 대 조 표

현	행	개	정	안
16조(과태료 및 배출부과금 부과기준) 법 제29조, 법 제37조제2항 및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3),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4)와 같으며, 기타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일반사항은 (청문, 과태료처분 통지 등)은 파주시 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조례에서 정한 서식등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 1] 분뇨수집수수료	(삭제) ※과태료부과 기준은 법 제58조, 영 제35조에 구체적명시 배출부과금부과 기준은 법 제29조, 영 제18조내지 영 제25조에 구체적으로 명시 [별표 1] 분뇨수집수수료 (신설) 비고 : 1. 수집수수료 산출공식 $\text{수집량} \ell \times \text{수거요금} \div \text{부과기준량} \ell$ 2. 원단위는 절사한다. ※ 수집수수료를 주민이 알기쉽게 공식 명기	[별표 2]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청소수수료	수수로 ※ 용어 정리 (신설) 비고 : 1. 청소수수료 산출공식 $\text{기본요금} + [(\text{청소용량} \ell - \text{기본용량} \ell) \times \text{초과요금}]$ 2. “원”단위는 절사한다. ※ 수집수수료를 주민이 알기쉽게 공식 명기	

신 · 구 조 문 대 조 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배출부과금의 부과기준	(삭제)		
1. 배출부과금의 부과기준	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산정 및 부과에의 기준은 영 제13조 내지 영 제19조 및 배출부과금사무처리규정에 의한다.	※법 제29조, 영 제18조 내지 영 제25조, 시행규칙 제63조. 제64조의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		
2.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영 제21조. 영 제22조 및 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한다.	※법 제37조 제2항 내지 제5항, 영 제28조, 영 제29조, 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		

신 · 구조문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과태료부과기준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사 제)		
		(단위 : 천원)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 과태료의 부과금액 명시 [시행령별표8]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1.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한자(별제5조)							
(1) 1일처리용량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오수처리시설							
(가) 방류수수질기준 50퍼센트 미만을 초과				1,000	2,000	2,500	
(나) 방류수수질기준 50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 초과				1,500	2,500	3,500	
(다) 방류수수질기준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미만을 초과				2,000	3,000	4,000	
(라) 방류수수질기준 200퍼센트 이상을 초과한 경우				2,500	3,500	4,500	
(2) 1일처리용량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							

신 · 구조문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삭 제)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 과태료의 부과금액 명시 [시행령별표8]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가)	방류수수질기준 50퍼센트 미만을 초과			1,500	2,500	3,500		
(나)	방류수수질기준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미만을 초과			2,000	3,000	4,000		
(다)	방류수수질기준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미만을 초과			2,500	3,500	4,500		
(라)	방류수수질기준 200퍼센트 이상을 초과한 경우			3,000	4,000	5,000		
2. 신고대상 축산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자(별제24조의2 제4항)								
(가)	방류수수질기준 50퍼센트 미만을 초과한 경우			1,000	2,000	2,500		

신 · 구조문대조표

원			행			개	정	안
[별표 4]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나)	방류수수질기준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미만을 초과한 경우			1,500	2,500	3,500		(각 제)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 과태료의 부과금액 명시 [시행령별표8]
(다)	방류수수질기준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미만을 초과			2,000	3,000	4,000		
(라)	방류수수질기준 200퍼센트 이상을 초과한 경우			2,500	3,500	4,500		

신 · 구조문대 조

현		행			개	정	안
[별 표 4]		과태료부과기준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삭 제)		
		(단위 : 천원)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 과태료의 부과금액 명시 [시행령별표8]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1. 단독정화조의 방류수수절기 준을 위반한 자(법제5조)							
(1) 처리인원이 90인미만				100	200	300	
(2) 처리인원이 90인이상				300	400	500	
2. 토지의 출입 또는 사용을 거 부하거나 방해한 자(법제6조 제4항)				300	400	500	
3.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 조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 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제9 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 가. 오수처리시설의 경우 나. 단독정화조의 경우				300 100	400 100	500 300	

신 · 구조문대조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각 제)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 과태료의 부과금액 명시 [시행령별표8]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4.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준공점사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시설을 이용한 자(별제12조, 제26조)								
가. 준공점사를 받기전에 사용한 경우								
(1) 단독정화조, 신고대상축산폐수처리시설의 경우			100	200	300			
(2) 오수처리시설의 경우			300	400	500			
(3) 허가대상축산폐수처리시설의 경우			500	700	1,000			
나. 준공점사에 부적합 판정을 받고도 계속 사용한 경우								
(1) 단독정화조, 신고대상축산폐수처리시설의 경우			500	500	500			
(2) 오수처리시설의 경우			800	800	800			

신 · 구조물대조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삭 제)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 과태료의 부과금액 명시 [시행령별표8]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3) 허가대상축산폐수처리시설 의 경우				1,000	1,000	1,000		
5. 오수처리시설등의 설계 또는 변경을 당해 시설의 설계, 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 39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 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맡긴 자(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항, 제27조)				500	500	500		
가. 단독정화조, 신고대상축산 폐수처리시설의 경우				800	800	800		
나. 오수처리시설의 경우				1,000	1,000	1,000		
다. 분뇨처리시설, 허가대상축 산폐수처리시설의 경우								

신 · 구조문대 조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삭 제)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췐시행령 제35조 제3항에 과태료의 부과금액 명시 [시행령별표8]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6.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을 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한 자(법제14조제2항, 제28조제3항)						
가.	방류수의 수질을 측정하지 아니하거나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	1일 처리대상인원이 2천인 이상인 단독정화조 또는 1일 처리용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은 분기별 1회이상	100	200	500			
(2)	허가대상축산폐수처리시설은 분기별 1회이상	300	500	1,000			
(3)	신고대상축산폐수시설은 연1회이상	100	200	500			

신 · 구조문대조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삭 제)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 과태료의 부과금액 명시 [시행령별표8]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나. 내부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 처리인원수 90인미만인 단독정화조 시설인 경우			100	300	500			
(2) 처리인원수 90인이상인 단독정화조, 오수정화시설, 신고대상축산폐수처리시설의 경우			300	500	800			
(3) 허가대상축산폐수처리시설의 경우			500	700	1,000			
다. 1일처리용량이 100세제곱이상인 오수처리시설 또는 1일 처리대상인원이 500인이상인 단독정화조의 방류수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00	500	1,000			

신 · 구조물 대 조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삭 제) ※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 과태료의 부과금액 명시 [시행령별표8]		
부	과	대 상	부 과 과 금 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라.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허가 대상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관리일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500	700	1,000			
마.	가~라 이외의 유지관리기준을 위반한 자		100	300	500			
7.	운영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법제14조 6항)		500	700	1,000			
8.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공산품을 사용한 자(법 제17조)		500	700	1,000			
9.	분노재활용신고를 아니한 자(법제20조2항)		500	700	1,000			
10.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한 자(법제24조의2제2항, 제4항)							
가.	허가대상축산폐수배출시설의 경우		300	400	500			

신 · 구조문대 조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삭 제)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 과태료의 부과금액 명시 [시행령별표8]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나. 신고대상축산폐수배출시설 의 경우			100	200	300			
11.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축산 폐수배출시설을 설치 사용 한 자(법제24조의2 제4항)			300	400	500			
12.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제30조제5항)			300	400	500			
13.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 가축 을 사육하는 자(법제34조제 1항 또는 제3항 규정)			300	400	500			
14. 분뇨관련영업 허가를 받은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 니한 자(법제35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			300	400	500			
15. 영업구역 기타 필요한 조건 을 위반한 자(법제35조제3 항)			500	700	1,000			

신 · 구조 문 대 조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삭 제)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 과태료의 부과금액 명시 [시행령별표8]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16.	규정에 위반하여	요금을 받		500	700	1,000	
	은 자(법제35조의3제1항)						
17.	분노처리시설 등의 설치시			500	700	1,000	
	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						
	하지 아니한 자(법제38조제						
	6항)						
18.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500	700	1,000	
	등의 제조업자의 준수사항						
	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39조제6항)						
19.	출입 · 조사 또는 검사등을			500	700	1,000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제39조의3제2항, 제46조						
	제1항 또는 2항)						
20.	기술관리인등의 준수 사항			500	700	1,000	
	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42조제3항)						

신 · 구조문대조

현				개	정	안
[별표 4]				(삭 제)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 과태료의 부과금액 명시 [시행령별표8]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21.	기술관리인 등의 교육을 받			500	700	1,000
	게하지 아니한자(법제43조					
	제1항)					
22.	장부를 기록 보존을 하지			300	400	500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자(법제44조)					
23.	휴업 · 폐업 등의 신고를 아			300	400	500
	니한 분뇨관련영업자, 정화					
	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					
	의 설계 · 시공업자(법제45					
	조)					
24.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			200	300	500
	위의 보고를 한 자(법제46					
	조제1항)					

신 · 구 조 문 대 조 표

현	행	개	정	안
《비고》 1.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 한다. 2. 하나의 부과대상행위가 다른 법률에서도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중 과태료가 가장 많은 금액만을 적용한다. 3. 위반행위의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의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4. 방류수의 수질에 대한 오염물질의 농도 및 제거율의 계산은 소숫점이하 첫째 자리 까지로 한다. 5. 허가대상축산폐수처리시설은 법제2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말하며, 신고대상축산폐수처리시설은 법제24조제4항의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가 설치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말한다.	(삭 제)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 과태료의 부과금액 명시 [시행령별표8]			